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16 발의연월일: 2021. 9. 10.

발 의 자:정태호·홍익표·장철민

허 영·한병도·이수진

이광재 · 강득구 · 김영배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자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기업 외부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음. 기존의 사후적 구조조정으로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패러다임 변화대응에 한계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받는 행정적 부담을 경 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게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하는 기업을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4조의2 신설, 제26조의2 삭제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디지털 전환"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은 기업
- 5.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 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은 기업

제6조제12항 중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을

"신산업판정위원회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디지털 전환"이란 「지능정		
	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공		
	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		
	품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		
	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10.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		
	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제4조(적용범위)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 정을 받은 기업

3. (생략) <신 설>

<신 설>

② (생략)

- ① ~ ① (생 략)
-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 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 하려는 사업의 신산업 해당 여 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 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이 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① (생략)

<신 설>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핀
정위원회(이하	"판	정위원회'
라 한다)		

- 3. (현행과 같음)
-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 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판 정을 받은 기업
- 5.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 은 기업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 ① ~ ① (현행과 같음)

-----신산업판정위원회를----

①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에 관한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4 < 삭 제> 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 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 나한다.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